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. 7. 24 선고 2018가단445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7. 10.

판결 선고 2019. 7. 24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3. 12. 31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83. 9. 30. 접수 제87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**판사**김진혜

별지